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인쇄/1998년 12월 26일

발행/1998년 12월 29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57-5

4,000원

연구보고서 98-15

•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 한 범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NGOs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통일기반조성과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NGOs를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NGOs의 개념

현재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분야는 정치,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된 문건이나 논문들에 따르면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분야가 주요영역으로 나타난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는 주민의 접촉, 남북한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협력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NGOs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UN이 정부이외의 NGOs와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 NGOs는 UN을 통해 포괄적 협의자격, 특정분야 협의자격 및 특정문제 자문자격 등 세 가지 종류의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취득할 수 있다. 오늘날 NGOs는 일반적으로 UN이 협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구나 국제법상의 규정을 넘어서 보다 광의의 의미로 쓰인다. NGOs는 비영리적 목적과 사적주도의 상설적 구조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 민간단체가 NGOs와

근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시민단체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며, 시민운동에 기반한 NGOs가 급증한 것도 이 시점을 전후해서이다. 1997년 발간된 「한국 민간단체총람」에는 약 3,900여개의 단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부를 포함하여 약 1만개이다. 1970년대에 비해 약 4배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이상이 87년이후 등장했다.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는 질적 변화를 동반하여, 단체의 조직양상이 분화되고, 활동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관련 NGOs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햇볕정책에 따라 교류·협력분야에 있어서 NGOs의 활동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와 NGOs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당국간의 조심스러운 교류·협력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회문화 교류·협력 역시 의미있는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고,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남북교류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되었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증가하는 추세

를 보여왔다.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경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빈도순위는 학술, 종교, 문화·예술, 관광·교통, 언론·출판, 체육, 과학·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분야중에서도 특히 학술교류가 다른 분야보다 많았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정경분리원칙을 천명하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활발히 추진되었다. 향후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광분야의 교류·협력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의 평양 체육관 건설추진 및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논의 등과 관련하여 체육교류도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지녔던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과 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이질화 극복과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NGOs의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NGOs의 자기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장기간 권위주의체제속에서 NGOs와 국가간 '일방적 억제'와 '비타

협적 비판' 관계를 형성해온 한국사회의 경우 NGOs가 국가에 대한 '비판적 협조자'로 기능하는 새로운 역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여하는 NGOs의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s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NGO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위에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NGOs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들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이룬 시민운동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통일관련 NGOs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만큼, 정부는 NGOs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은 매우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어 집행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NGOs에 대해서 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을 다양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정한 NGOs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NGOs 협의체가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민화협」을 통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개발NGO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참조, 이를 응용하여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NGOs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어려울 경우 NGOs를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위임방식(Sub-contracts)은 NGOs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s의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편차가 크고, 정부의 일방적 지원

의 경우 NGOs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협력방식(Co-financing)도 효과적일 수 있다.

NGOs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접촉승인제의 개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절차의 간소화, 북한방문기간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편·통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기부금품모금규제의 완화, 인도적 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그리고 ARS모금 활성화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 및 창구다원화는 동시에 교류·협력에 대한 과당경쟁과 과열,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NGOs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환 및 공동협력사업의 실시, 그리고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와 보다 효율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협의체의 구성은 전체네트워크 구성과 분야별 전문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1998년 9월 출범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협의체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협의체 및 구심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화협」의 결성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민화협」은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권위있는 민간협의체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화협」과 같은 전체네트워크의 구성과 아울러 전문분야별 협의체 구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NGOs는 전문활동분야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 해당 NGOs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제 NGOs와의 연대는 북한측으로부터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대북사업의 성사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도 각 분야별 국제 NGOs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할 것이다.

NGOs를 통한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NGOs의 자율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NGOs의 투명한 활동을 위해서는 NGOs 자체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및 정치권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와 같은 전제위에서 NGOs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활성화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NGOs의 개념	4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개념	4
2. NGOs의 정의	7
3. 한국 NGOs 현황과 통일관련 NGOs	13
II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와 NGOs	20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20
2.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28
3.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NGOs의 역할	32
IV.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41
1. NGOs와 정부의 상호보완적 관계설정	41
2. NGOs에 대한 재정 지원	46
가.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통일기금 조성	46
나. 재정지원방식의 다각화	50
3. 법제도 개선 및 기타 지원	52
4. NGOs 협의체 구성	55
5. 전문 NGOs와 국제 NGOs 활용	60
V. 결론	62
참고문헌	65

- 표 목 차 -

<표 1>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구분 13
<표 2> 대북지원실적 17
<표 3>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단체 현황 31
<표 4>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43

I. 서론

장기간 지속되어온 분단구조는 남북한에 상이한 체제와 생활세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통일은 가시적인 제도적 통합과 아울러 동일한 생활세계를 바탕으로한 의식 및 행동체계가 확립되어야 달성되는 장기적 과정이다.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극복은 단절과 고립의 해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따라서 통일과정중의 교류·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로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된 90년대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제도화의 틀속에 놓이면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한간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민족공동체의 건설과정으로서 현 시기가 화해·협력단계로 설정됨으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대립관계 청산 및 신뢰구축이 중요한 목표로 등장했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 및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쌓아 가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간분야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우 특성상 민간분야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 성과 내지는 과시적 목표달성보다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극복과 민족공동체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협력과정에서 비정부기구 즉, NGOs(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

2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NGOs는 이를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적 교류·협력구도 설정은 남북간의 상호적대감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사회문화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NGOs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시세력으로서 NGOs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특성에 기인한 현상이다. 80년대 후반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가 점차 성숙되어감에 따라 NGOs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동시에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교류·협력분야에서도 실질적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NGOs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일관련 NGOs의 경우 정부와의 효율적 협력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질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NGOs의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억제하고, 상호공조를 위한 자율적 협의체구성도 미비한 상태이다.

민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직화하는 NGOs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 제기되기 어려운 문제 내지는 정부간의 공식적 교섭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화해·협력의 구현과 이질화의 완화 및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이를 위한 NGOs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NGOs를 통한 남북
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II.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NGOs의 개념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개념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개념상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의가 쉽지 않다. 우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의 자체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사회란 “일정한 영역 내 구성원들 사이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의 체계”¹⁾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행위자로서의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구조 등의 단위들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의 개념도 타일러(E. B. Tylor)가 언급했듯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complex whole)”라는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²⁾ 다시 말해서 문화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회’와 ‘문화’는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분야는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된 문건이나 논문들에 따르면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관광분야가 주요영역으로 나타난다.³⁾ 그러나 대북지원

1) G. Ritzer, et. al., *Sociology* (Allyn & Bacon, 1979), p. 15.

2) E. B. Tylor, *Religion in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and Row, 1958), p. 1.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일조각, 1983), p. 35에서 재인용.

3) 「남북기본합의서」의 15조는 경제교류, 16조는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 그리고 17조는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문화교류인 16조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인적교류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및 이산가족상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NGOs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고 이루어 지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에는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북한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협력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다.⁴⁾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간 주민의 접촉,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그리고 협력사업은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접촉’은 남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정보나 메시지의 교환과정을 말하며, 쌍방간의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을 경우 이는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남북한주민의 직접적인 대면이외에 중개인 혹은 여타의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한다.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판문점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한 방문 역시 남북간의 왕래에 해당한다. 왕래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나열된 분야는 ‘여러 분야’의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 등의 분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2), pp. 184-192. 「사회문화공동위수첩」(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추진사례를 열거하면서 주요분야로 출판보도, 학술, 예술, 종교, 체육분야를 예시하고 있으며,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서울: 통일원, 1996)도 사회문화분야로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이외의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등에서도 유사한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4)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pp. 1-26. 참조.

그러나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해당분야에서 상대방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속성있는 행위들을 말한다.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루어진 협력사업은 경제분야에 비해 미미한 실정으로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한 것 등이 있었으나 이후 1997년 11월까지 승인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이를 남한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신청한 중앙일보사 부설 「통일문화연구소」에 대해 1997년 12월 10일자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다. 이는 1997년 6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이후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이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문화협력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협력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화해·협력단계에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전제조건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문화 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이를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민간분야

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조. 또한 1997년 6월에 제정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은 보다 세밀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NGOs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⁶⁾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인 사회문화분야에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NGOs는 이를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NGOs의 정의

비정부기구 즉,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s)는 정부나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은 기구로 개인과 법인 모두 NGOs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자격이나 활동의 범위가 한 국가에 한정되어있는 경우(National NGOs)와 국제적인 경우(International NGOs)에 따라 나뉘어진다. NGOs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UN이 헌장 71조를 통해서 정부이외의 NGOs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⁷⁾ UN은 헌장을 통해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가 그 권한내에 있는 NGOs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NGOs는 UN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그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보장받고 있다.⁸⁾ UN

6)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4-19. 전효관, 「통일관련 시민단체의 역할과 새로운 방향」,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pp. 14-15. 조한범,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참조.

7) NGOs와 UN의 관계에 대해서는 Dianne Ott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emerging role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Human Right Quarterly*, Vol. 18. 1996. 참조.

8) NGOs는 1949년 UN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 UN 산하기관과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들을 의미했으나, 1950년(ECOSOC Resolution 288(X))과 1968년(ECOSOC Resolution 1296(XLIV))의 개정을 거쳐 UN과의 협의적 지

과의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⁹⁾ UN경제사회이사회는 NGOs와의 협의관계의 성격규정을 통해 NGOs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NGOs는 UN현장 제 71조의 규정에 따른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296호에 의거하여 포괄적 협의자격, 특정분야 협의자격 및 특정문제 자문자격 등 세 가지 종류의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정부기구위원회(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희망 NGOs를 심의, 협의자격을 부여한다. UN경제사회이사회는 자격을 얻은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에 대한 UN경제사회이사회 위원회(ECOSOC Committee on NGOs)를 통해 협의한다. 협의자격을 획득하는 데에는 유엔현장 이념준수, 비영리목적, 회비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등에 있어서 유엔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단체의 재정구조가 중요하며, 정부보조가 20-30%를 넘을 경우,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자격을 얻은 NGOs는 유엔의 각종 공식자료를 제공받으며, 매 4년마다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세 가지 협의자격은 아래와 같다.¹⁰⁾

위를 획득했다.

- 9) 우선 행정사무관이 있는 상설적 본부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민주적으로 채택된 규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조직이 동일분야에 있을 경우 조직들의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등이다. H. G. Schermers,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Sijthoff & Noordhoff International Publishers, 1980), p. 107. 국제협회연맹(The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은 국제 NGOs를 규정하는 7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목적이 국제적이어야 한다. 2) 투표권을 가진 세 나라 이상으로부터의 성원들이 있어야 하며, 한 국가의 집단이 조직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3)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어야하며, 상설적 지휘부가 있어야하고 활동이 지속성을 가져야한다. 4) 다국적 성원으로 구성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5) 재정의 총당이 국제적이어야 한다. 6) 기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7) 활동이 있어야 한다. 5년이상 활동이 없는 기구는 국제 NGOs로 규정될 수 없다. *Year 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1977). H. G. Schermers,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p. 24. 에서 재인용.

포괄적 협의자격(Category 1): NGOs의 활동이 경제사회이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주어지며, 경제사회이사회나 산하위원회 회의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과 투표권없는 참여 및 발언이 허용된다. 또 자료를 배포할 수도 있다. 1998년 현재 로타리 클럽, 국제유엔협회 등 약 80여개의 NGOs가 여기에 속한다.

특정분야 협의자격(Category 2): NGOs의 활동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주어지고, 경제사회이사회나 산하위원회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료배포도 가능하나 의제 제안권은 없다. 1998년 현재 국제사면위원회, YMCA 등 500여개의 NGOs가 여기에 속한다.

특정문제 자문자격(Roster): 특수분야에서 경제사회이사회의 활동에 간헐적으로 관여할 때 인정된다. 이들은 경제사회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관련 전문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996년 8월 현재 이 자격을 얻은 NGOs는 563개이다.

한국의 경우 1996년 「이웃사랑회」가 유일하게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자격(Category 1)을 획득했으며, 「밝은 사회 국제클럽한국본부」, 「환경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특정분야 협의자격(Category 2)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NGOs는 일반적으로 UN이 협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구나 국제법상의 규정을 넘어서 보다 광의의 의미로 쓰인다. Salamon과 Anheier는 NGOs의 주요 특성

10) H. G. Schermers,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pp. 106-111. Peter Willet, "From Stockholm to Rio and beyon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No. 22, 1996, pp. 63-65. 이원웅,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대한 연구-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6, pp. 164-174. 「시민의 신문」, 제 261호, 1998. 참조.

으로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비정부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자치성을 갖고 일정부분 자원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국제 조직뿐만이 아니라, 국내조직, 풀뿌리조직, 이익단체, 네트워크, 서비스제공단체, 기부단체, 개발사업수행단체, 권익옹호단체, 전문직단체, 지역단체, 협동조합, 빈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를 NGOs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¹⁾ NGOs는 비영리적 목적과 사적주도의 상설적 구조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구별되며, 상설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공식그룹 등과 다르며, 사적 주도로 설립되므로 비정부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NGOs는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와 같은 점에서 NGOs는 제1부문인 정부부문과 제2부문인 기업부문과 구별되는 제3부문의 주요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NGOs 용어를 광의로 사용할 경우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전적으로 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정부형태의 모든 조직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또한 NGOs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및 재정문제에 있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NGOs로 분류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NGOs는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 재원조달방식에 따라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실례로 사회주의 국가나 권위주의국가 등 시민사회가 미발달한 독재적 국가들에서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비정부기구(Governmental-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1) L. M. Salamon & H. K. Anheier, *In search of non profit sector: The question of defini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 김혜경,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혁래 외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실련, 1997), pp. 101-102에서 재인용.

12) 김채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2), pp. 8-9.

GONGOs), 공적재원조달에 의존하는 유사 비정부기구(Quasi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QUANGOs), 기부자에 의해 성립된 기부형 비정부기구(Donor-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ONGOs), 그리고 기업체의 주도로 만들어진 기업관련 비정부기구(Business-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ONGOs)등이 있다.¹³⁾

또한 NGOs 라는 용어도 국가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발성을 중시하여 NGOs라는 용어 대신에 자원적 기구(Voluntary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국가도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로 흔히 쓰이는 표현은 PV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혹은 NPO(Non-Profit Organization)이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자원적 발전기구(Voluntar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¹⁴⁾ NPO의 경우 정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된다. 공식적 조직을 갖출 것, 제도적으로 정부와 독립된 민간차원일 것, 이익배분을 하지 않을 것, 자주적으로 관리될 것, 공공의 이익을 취할 것 등이다. 따라서 NPO는 비정부적 성격을 강조하는 NGOs보다 협의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활동분야의 측면에서 NPO는 오히려 NGOs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NPO를 포괄적 민간법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NPO의 일부로서 국제협력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NGOs로 규정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NGOs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포

13) 김영래, “한국비정부단체의 세계화전략연구”, 『국제정치학논집』, 제 37집 1호, 1997, p. 241.

14) 김재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 pp. 9-10.

15) 이면우 편, 『일본의 NGO활동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1998), pp. 3-5.

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적인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비정부성¹⁶⁾, 비영리성, 자발성을 지닌 단체, 협회, 조직, 결사 및 운동으로서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명시적인 규율을 바탕으로 공식조직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NGOs의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성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말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NGOs와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시민단체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를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되고, 구성원을 위한 특이익보다는 사회의 공공이익의 증진에 중점을 두는 단체로 규정하여 단체의 중심적 목적 및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아래의 <표 1>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경우 주로 사적·특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약사회의 환경보호운동과 같이 민간단체도 공적·일반적 이익의 추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¹⁷⁾. 특히,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의 자기생존 또한 주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16) 이와 관련 “non-governmental”의 의미는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의 ‘기능’과 관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정부의 하부기관들이 비정부기구들의 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 G. Schermers,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p. 24.

17)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연구」(서울: 정무제1장관실, 1997), 2장 참조.

<표 1>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구분

단체의 종류\이익의 종류	사적·특수적 이익추구	공적·일반적 이익추구
시민단체	A	B
민간단체	C	D

- A. 시민단체의 부차적 활동영역
- B. 시민단체의 일차적 활동영역
- C. 민간단체의 일차적 활동영역
- D. 민간단체의 부차적 활동영역

자료: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연구」, p. 13.

따라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의 개념은 시민단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의 특성상, 사적·특수적 이익의 실현보다는 공적·일반적 이익의 실현이 주요한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차원에서 주요 관심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한국 NGOs 현황과 통일관련 NGOs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는 NGOs의 발전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아직 발생적 단계에 있는 시민사회를 침식하고, 통제함으로써 지배세력의 자율성을 확장시키려 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와 민주화를 위한 저항세력을 배양했다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다.¹⁸⁾ 한국사회의 권위주

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며, 시민운동에 기반한 NGOs가 급증한 것도 이 시점을 전후해서이다.

1987년 이전 사회운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라는 공동의 목표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급진노선과 온건노선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을 계기로 점진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운동사이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다. 1987년 이후 초기에는 민중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했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NGOs가 출현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이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및 신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대표적인 한국 NGOs 중의 하나인 「경실련」의 경우,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정치적 순수시민운동, 점진주의적 비폭력·평화·합법운동을 지향했다.¹⁹⁾ 전반적으로 1987년 이후 「문민정부」의 등장과 「국민의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s 활동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

1997년에 발간된 「한국민간단체총람」에는 약 3,899개의 단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부를 포함하여 약 1만개이다.²⁰⁾ 그러나 이들을 모두 NGOs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단체를 별도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899개의 단체중 NGOs는 약 730개로 나타났다.²¹⁾ 1970년대에 비해 약 4배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이상

18)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 75.

19)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방안연구」, pp. 18-19.

20) 시민의신문사, 「한국민간단체총람」, 1997.

이 1987년 이후 등장했다. 1987년 이후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는 질적 변화를 동반하여, 단체의 조직양상이 분화되고, 활동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등과 같은 불특정다수의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²²⁾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통일논의에 대한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NGOs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통일관련 NGOs의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4년 경실련은 통일관련 민간단체 조사과정에서 대략 250개정도 단체를 찾아냈으나, 실제로 경실련의 조사에 응한 단체는 171개였다.²³⁾ 그러나 이후 대북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이 증가추세에 놓였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관련 NGOs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998년 6월 10일 현재 통일부 허가 법인은 총 50개로 분야별 실태는 아래와 같다.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통일활동 전반(21개)>

민족통일협의회, 민족문화통일회, 평화문제연구소, 민주통일촉진회, 한민족세계선교통일교육원, 통일기념사업회, 21세기 통일준비운동본

21)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 NGO의 현황”,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안」,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7), p. 25.

22) 김영래, “한국 비정부단체(NGO)의 세계화전략 연구”, pp. 251-253.

23)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 1994), p. 5. 또한 1998년 12월 현재 천리안 민간단체 종합정보 민족통일분야에는 경실련 통일협회를 포함 총 112단체가 수록되어 있다.

부,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세계한민족평화 통일협의회, 민족통일불교협의회,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한민족 통일축전협회,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21세기통일봉사단, 사단법인 통일건국민족회, 국민정신증흥회,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대한민국팔각회, 한민족운동지도자연협회,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학술·연구단체(16개)>

북한연구소, 평화연구원, 한국발전연구원, 한우리연구원, 한민족통일 연구중앙협의회, 통일시대연구소, 다물민족연구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세계한민족연합, 한국청년정책연구소, 통일경제연구협회, 백천 통일시대연구원,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한국사회통일연구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교류·협력분야(6개)>

남북문화교류협회, 민족통일선교협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경실련 통일협회, 한겨레평화통일협회,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인도지원분야(7개)>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남북나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북한민주화 촉진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통일문제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제한했던 시기의 경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NGOs의 역할도 자연히 제약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화진행과 시민운동활성화와 병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NGOs 활동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통일관련 NGOs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인도적 대북지원분야이다. 이에 따라 아직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는 크게 못미치나 NGOs의 대북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웃사랑회」²⁴⁾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NGOs가 대북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북지원분야에서의 NGOs의 활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더 증가하고 있다.

<표 2> 대북지원실적

구 분	한 국		국 제사 회	
		정 부	2억 6,242만불	UN기구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 (’95.6 ~ ’98.2)	민 간	2,229만불	개별국가	1억 7,273만불
	소 계	2억8,471만불	국제NGOs	7,201만불
			소 계	4억1,660만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98.3 ~ 8.20)	정 부	1,100만불	UN기구	9,258만불
	민 간	953만불	개별국가	7,544만불
	소 계	2,053만불	국제NGOs	1,206만불
			소 계	1억8,008만불
총 계	3억524만불		5억9,668만불	
비 고	옥수수기준 190.7만톤		옥수수기준 372.9만톤	

* 국제사회 지원실적에는 한국측 기여분 제외

자료: 통일부,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1998), p. 28.

24) 특히 「이웃사랑회」의 경우 지금까지 적십자사 단일창구체제하에서 처음으로 개별 대북지원을 승인받아 98년 9월 젓소 등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였다. 「이웃사랑회」는 한국의 자생적 NGOs로서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UN으로부터 포괄적 협의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이 NGOs활동이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분야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98년의 경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한 도서교류 캠페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시켰으며²⁵⁾,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일본의 3자여성회담이 베이징에서 개막되어 남북한과 일본의 NGOs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²⁶⁾ 또한 1998년 10월 발기된 「동북아 산림포럼」도 북한과 중국 등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NGOs간의 국제적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²⁷⁾ 이외에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
- 2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 9월 한국출판협동조합, 경인여자대학,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남북한 도서교류 캠페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북한에 전문과학도서를 비롯한 각종서적을 보내는 작업을 추진시켰다.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를 북한측 파트너로 한 이 사업은 11월초 현재 목표치 3만권을 넘는 도서가 접수되었다. 1999년 1월말경 인천-남포간 해운편으로 북한측에 전달될 것이며, 북한측의 도서를 받아올 예정이다. 북한측에 요청한 도서는 우리측 도서 접수시 학계 출판계등으로 부터 요청받은 도서들로 목록이 미리 북한측에 전달되었다. 일방적 교류와 달리 남북이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학술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로서 향후 도서출판교류, 학문 및 정보의 정기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12. 1. p. 2.
- 26) 1998년 10월 9일 개막된 이 회의는 북한 「중군위안부 및 대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제안으로 실현되었으며,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 6명, 북한측에서 8명, 일본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부인연락회」에서 7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위안부문제 해결이라는 단독 안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남북한 인사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담에서 대표들은 11일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인정해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 4개항의 항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3자회담 대표들은 앞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의한 「2000년 여성전범 국제법정」에 참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연합통신」, 1998. 10. 11.
- 27)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이 주축인 「동북아 산림포럼」이 10월 9일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동북아 산림포럼」은 중국과 몽골,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국제적 공동전선구축을 목표로 유엔개발계획, 북경대 환경연구소, 일본, 홍콩, 대만 등의 국제식목단체들과 대상지역에 대한 식목 국제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북아 산림포럼」에는 환경운동단체관계자, 교수, 임업분야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이 참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8. 10. 10.

따라서 향후 NGOs의 활동은 인도적 대북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점차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분야로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Ⅲ.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와 NGOs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당국간의 조심스러운 교류·협력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의미있는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다.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는 냉전체제의 고착화라는 상황 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문제제기 혹은 정치적인 선전의 장에 머물러 있었다. 이시기 북한은 통일전선전략차원에서 다양한 선전성 제안을 해왔다. 1957년 남북언론인 교류제의, 1958년의 제 17차 올림픽대회를 위한 단일팀 구성제의, 1965년 인민배우 박영신의 남북공동영화제작 및 연극경연대회제의, 그리고 1966년 북한 언어학자 홍기문의 기자교류제와의 조류학자 원홍구의 과학자교류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않은 채 “대남호소문”의 형식으로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제의로 끝나고 말았다.²⁸⁾ 이는 북한의 교류정책이 통일전선전략이라는 상위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 적십자회담으로 대표되어 진다.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교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남북한 내부의 정세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팜독트린」과 「닉슨독트린」의 천명으로 한반도 주변에는 유동적인 정세가 조성되었다.²⁹⁾ 또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미소

28)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 연구”, p. 230.

양극구도에서 중공과 미·일의 접근에 따른 다극화체제로 변화했고, 월남전의 종전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남한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게 만들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남북대화추진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반면 북한측은 월남의 공산화에 자극받았으며, 미국의 일련의 태도변화를 아시아에서의 후퇴로 간주하였다. 또한 남한내의 정치적 상황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를 통일전선전술에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1971년 최두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가 남북간 가족찾기운동을 북한측에 제의했고, 북한측의 손성필 위원장이 화답함으로써 당해 8월부터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³⁰⁾ 이에 따라 남북한적십자는 1977년까지 비교적 활발한 접촉을 가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 적십자는 1978년 3월 19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제 8차 본회담을 위한 제 26차 실무회의를 무기 연기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그 동안의 교류·협력을 중단하였고, 이후 1984년 남한 수재에 대한 북측의 지원제의 이전까지 실질적인 남북적십자간의 교류는 공백기를 맞이했다.³¹⁾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개설, 7.4남북공동성명 등 정치적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적십자간의

29) 1969년의 판독트린은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1970년의 닉슨독트린은 판독트린의 전세계적인 적용으로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보해왔다.

30)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이와 같은 제의가 가능했던 것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통해 대북한 유화제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장벽을 제거해나갈수 있는 획기적이고 인도적인 방안들을 제의할 용의가 있으며, 개발과 건설을 통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31) 남북적십자간의 구체적인 접촉일지와 결과는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수첩」, 1994. 참조.

접촉은 의도했던 이산가족간의 만남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다. 따라서 1970년대의 남북한 교류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서도 주민들간의 실질적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였다.

1980년대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LA올림픽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경제회담과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정부와 정치분야에서의 공식적인 접촉이 행해짐으로서 남북간의 대화창구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사례로서는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의 2건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 시작했다.³²⁾ 또한 후속조치들로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했고, 동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과 이들의 실정범위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형선고,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비방 등 일련의 과정은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동시에 민감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1990년 2월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5원칙」³³⁾

32) 7.7선언은 남북교류의 적극추진, 남북간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공산권자료의 일반개방과 월북 및 남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부분적인 해금조치를 취했으며, 남북교육당국회담 등을 제의했다.

33) 「남북문화교류의5원칙」의 내용은 문화교류과정에서 분단이전의 민족전통문화를 우선 교류한다는 것,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방식의 지양,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 공동실행을 위한

을 발표했으며, 마침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³⁴⁾도 조성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남북교류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되었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³⁵⁾ 따라서 1990년대는 제도화된 틀 내에서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남북관계 제도화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다. 1992년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년 9월에 「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또한 1997년 6월 27일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제도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 역시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고³⁶⁾ 다양한 분야에 걸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 등이었다.

- 34)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지원, 촉진시키기 위해서 1990년 8월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지원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 3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이전까지 남북한 주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체제내에서 다루어 졌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교류협력의 승인권이 통일원으로 일원화되고, 순수한 목적의 남북교류협력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원, 「통일백서」, 1992, pp. 264-279. 참조.
- 36) 그러나 정부는 대북 접촉 및 교류에 관한 허용기준으로 ①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②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③교류사안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운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의 17조에 제시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왕래와 접촉이라는 뜻이며,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 p. 192.

처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난과 수해 등에 기인한 식량난을 겪게되자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 통일관련 NGOs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인도적 대북지원분야이다. 「이웃사랑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NGOs가 대북지원사업을 벌였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교류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교류는 부문별로 편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1989년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특히 「국민의 정부」가 대북포용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1989년 6월 이후 1998년 10월 31일 까지 사회·문화부문의 남북간 교류·협력에서 분야별로 성사된 건수는 학술 133건(1,700명), 종교 93건(723명), 문화·예술 67건(648명), 관광·수송 59건(213명), 언론·출판 42건(127명), 체육 40건(107명), 과학·환경 35건(241명)으로 집계되었다.³⁷⁾ 사회문화부문중에서도 학술 및 종교분야에서의 교류가 다른 분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술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학술분야의 경우 남북한 왕래교류³⁸⁾보다는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측은 이와 같이 제 3국에서 접촉을 선호하며, 중국지역이 가장 많이 이용되

37)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88호, 1998. 10월.

38) 학술분야의 남북한 왕래교류는 1991년 11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1992년 9월 「평양동북아 경제포럼」, 1992년 9월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 세미나」, 그리고 1993년 11월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실무 안내」, 1996, pp. 46-47. 참조.

었다.³⁹⁾ 중국의 연변대, 요녕대, 길림대, 북경대 등에 소속된 연구소와 오사카 경제법과대, 국제고려학회 등이 남북한 접촉의 중개인 역할을 했다. 학술교류는 점차 정례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도의 경우 예년과 같이 제 3국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협력사업 및 자매결연사업 등이 성사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내용이 한층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에 대해 나진·선봉지역 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학술분야의 협력사업의 첫 사례이다. 또한 성균관대학의 정범진총장이 방북하여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기타 학술교류를 협의하였는 바, 이는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이다.

1989년 이후 1998년 10월말까지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왕래교류로서 남북국악인 교환공연인 1990년 평양에서의 「범민족통일음악회」, 서울에서의 「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등이 있었고, 1990년 뉴욕의 「남북영화제」, 1991년의 경우 일본에서 「환동해 국제예술제」, 사할린에서 「남북통일 전통풍속제」 그리고 1992년 사할린에서 「통일예술제」 등이 개최되어 남북교류가 있었다. 1997년의 경우 동경에서 「남북평화미술전」 있었다. 1998년의 경우 협력사업 추진 등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문화방송이 방송사 최초로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등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사업 추진목적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방북, 평양공연을 하였는 데 이는 분단이후 첫 순수 민간예술단체의 북한공연성사라는

39) 이는 한반도 내부보다 정치적인 영향요인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선호되는 이유는 연변지역 교포들이 과거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인적인 연줄을 확보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접점이 작용하여 북한측의 참가가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미를 지녔다. 또한 남북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진집 「백두에서 한라까지-렌즈로 본 조국」이 발간되었으며, 서울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3국에서의 교류는 학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해외동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남북간 종교교류로는 1991년 광선회 목사(소망교회), 1992년 권호경 목사(KNCC 총무), 1995년 김상진 신부 등 주로 기독교, 천주교계의 인사들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1998년의 경우 종교분야의 교류가 크게 증가했다.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최창무 주교 등 위원 7명이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한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다.⁴⁰⁾ 또한 개신교의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북한과 종교교류를 실시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출범후 전반적으로 종교계의 방북이 활기를 나타내고 있는바, 정부의 민간교류활성화 정책과 북한의 지원요구 증가라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종교인들의 남한방문은 없었으며, 대체로 제3국에서 종교교류가 많았다.

언론·출판분야의 특성상 북한실상의 공개, 정보의 교류와 유입 등을 꺼리는 북한측이 체제유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특히 언론분야의 교류·협력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행취재형식의 동반적인 형태를 띠고 이루어 졌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가 교류를 희망했고, 언론사들도 북한지역 취재를 추진했으나 성사

40) 「조선일보」, 1998. 5. 23.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상황이 점차 변화하여, 문화방송의 '금강산 자연다큐멘터리 제작' 등 사업성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1998년의 경우 특히 신문사들의 방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답사를 목적으로 방북하였으며, 경향신문도 대북문화정보화사업 목적으로 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을 받아 한민족문화네트워크의 구성 협의차 방북하였다. 중앙일보도 남북언론교류 및 문화교류 협의차 방북하였으며, 동아일보의 언론교류협의 및 문화유적 답사·취재협의를 위한 방북도 성사되었다.

체육분야의 남북왕래교류로는 「남북통일축구대회」와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 등 5건이 이루어 졌다. 1990-1991년에는 「남북통일축구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구성 등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1991년 8월 북한유도선수의 망명으로 북한측은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을 이유로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는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와 관련, 평양에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월드컵 경기일부를 북한지역에서 개최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체육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점차 빈도와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추세속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고 1998년 11월 18일 첫 유람선이 출항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광이 시작되었다. 이는 대규모 일반주민들의 관광목적상 방북이 사실상 무제한적으

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향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전 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대북포용정책’ 혹은 ‘햇볕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내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무리한 통일의 추구보다는 통일의 기초 형성에 주력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설정했다. 현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에 따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류·협력사업의 전개는 남북 평화공존 및 공동의 번영을 위한 화해·협력을 지향하며,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3.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⁴¹⁾를 발표하였다. 3.18조치에 따라 이후 실시된 적십자의 대북지원에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등 6개단체 6명이 구호물자 인도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등 3개 단체 5명이 대북지원 협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급식의 날」등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정부는 또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을 천명했으며, 구체적으로 1998년 4월 30일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정부의 과당경쟁방지 역할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함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⁴²⁾를 취했다. 이에 따라 대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경협활성화 조치와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에 따라

41)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 확대
 -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참여 허용
 - 대북지원 협의·모니터링 목적의 접촉 및 방북 허용
- *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 완화
 - 자선음악회·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 언론사·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기탁 허용
- *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42)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을 원칙: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및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접촉(20일→15일), 방북(30일→20일)
- 범위내에서 「포괄승인 품목」 확대,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경제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 협력사업의 투자규모제한 폐지,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은 교류·협력활성화 정책의 구체적 결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북경협은 IMF체제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⁴³⁾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의 경우(10월 31일 현재)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종교 34건, 문화·예술 26건, 학술 21건, 관광·수송 20건, 언론·출판 10건, 체육 9건, 과학·환경 3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종교와 문화·예술부문의 교류·협력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으며, 관광·수송분야의 교류·협력증가는 금강산 사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된 것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기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는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협력사업에 있어 「국민의 정부」 들어 예비단계인 「협력사업자」 승인 6건, 최종단계인 「협력사업」 승인 5건이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승인건수의 2/3에 해당된다.

43)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관계는 남한의 경제위기상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외화난과 내수위축에 기인하여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1998년 1월부터 10월까지 남북한 교역총액은 1억 7천9백 4만 3천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3%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이유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중 반입(7천4백6십1만 6천 달러)은 전년 동기대비 56.6% 감소했고, 반출(1억 4백4십2만 7천달러)은 0.5% 감소하였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86호, 1998.

<표 3>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단체 현황

사업자	사업내용	승인일
*대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91. 4.24-5.6) 남북단일팀구성·참가(일본)	'91. 3.21 ('91. 3.21)
*대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91. 5.27-6.4) 남북단일팀구성·참가(포르투갈)	'91. 5.1 ('91. 5.1)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역사유적지)	'97. 12.10 ('97. 12.10)
*연변과기대후원회	나진과기대 건립·운영	'98. 1.9 ('98. 6.5)
문화방송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	'98. 3.13
*한민족복지재단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98. 4.8 ('98. 6.5)
*한국사진학회	남북 사진전 및 사진집 발간	'98. 4.29 ('98. 4.29)
*스포츠아트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98. 4.29 ('98. 4.29)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연구소(경향신문)	대북 문화정보화사업	'98. 5.11 ('98. 6.20)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북한 명산 및 역사적 명승지 탐방 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98. 8.6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 ()는 협력사업 승인일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86호 (1998), pp. 67-68.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

양화되는 가운데 관심의 대상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수송분야의 교류·협력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과 같이 종교교류 및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다소 위축되었던 체육교류의 경우, 현대의 평양체육관 건설추진 및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논의 등과 관련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 및 체제위기심화를 우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사회·문화교류를 피하고 있으나, 실리추구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교류·협력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측의 자세변화추이를 주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경분리원칙의 확대적용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을 장기적 차원에서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NGOs의 역할

분단이후 현재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지녔던 본질적인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그 동안 주변적인 조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받았다. 특히 정치적인 요인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44)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상호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은 그 동안 남북관계가 체제경쟁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경직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체제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사회주의체제가 실질적인 체제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까지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문화정책의 중심은 반공정책이었다. 이는 북한과 무력을 동반하는 적대적 긴장관계에 직면한 한국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북 교류·협력의 개방적 가능성도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제약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사회문화정책을 유지한 북한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영역자체가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순응적 사회주의인간형의 형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는 사회통제와 사회주의문화의 타율적 전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율적인 사회문화요소들의 기능이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제한되었고, 왜곡되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제의들은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성사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류·협력의 형태도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

44) 전체적으로 최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김일성의 사망 등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으며,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1994년 일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과 민예총이 북한민예총과 함께 서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은 김일성사망에 따라, 북한측이 이를 연기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한 1990년의 「제 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북한측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이 문제가 되었으며, 1992년 「노부모고향방문단」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인모의 송환과 포커스렌즈훈련이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 그 자체보다 정치적인 선전성을 우선시한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으며, NGOs의 역할도 부각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인식 하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영역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회문화 교류·협력분야를 제한했던 정치적인 영향요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체제경쟁의 요소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는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측의 체제약화과정은 남한측에게 자신감 있고, 융통성 및 과감성있는 사회문화교류를 시도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 긍정적인 시민사회적 요소가 보다 확장되었다는 점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양보를 통해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미 밝힌 대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통일이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강조점도 일정정도 다르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설명에 있어서 이를 정치, 경제적 측면과 구별되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일문화'로 상징화되는 통합의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다.⁴⁵⁾ 이 경우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회복이 주요과제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전통문화분야 등에서의 접촉과 교류강화를

강조한다. 정치적, 경제적 제도상의 통합 즉 체제통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회통합을 설정하는 논의에서는 체제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의 '인간통합'을 강조한다.⁴⁵⁾ 이에 비해서 사회통합의 원칙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설정하고, 시민권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상태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논의는 사회통합의 주요 과제로 자산 및 소득격차, 탈 숙련화와 실직, 사회보장문제, 문화적 이질감, 지역생활환경의 붕괴, 이념 및 정치참여문화의 차이점들이 상정된다.⁴⁷⁾ 그러나 가장 포괄적인 사회통합개념의 설정은 오페(Claus Offe)의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오페에 따르면 사회의 거시적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의 세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⁴⁸⁾ '사회'와 '문화'는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광의의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 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45)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이은숙,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서울: 삶과 꿈, 1997).

46) 전성우는 동서독의 사회통합과정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적 근대화전략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이 서독의 자본주의적 특성과의 통합과정으로 사회통합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동독인들이 서독의 가치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1-44.

47) 장경섭, 「통일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서울: 세종연구소, 1995), pp. 419-455.

48) 박형중은 오페의 분류를 이용 남북한의 사회통합상의 기본문제로서 경제-사회적 차원, 제도통합의 차원, 문화정서적 차원을 들고 있다.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128-156.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은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과 북의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 수렴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대개의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남한사회자체의 기반형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IMF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의 산업화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 따라서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와의 결합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남과 북 자체내의 일련의 변화를 포함하는 과정적·미래적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통일관련 민간분야 및 NGOs의 역할도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민간분야의 기여는 통일기반조성과 교류·협력에의 참여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질 수 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기반, 남북통일의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NGOs는 이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NGOs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권차원의 경우 통일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자신들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s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합리적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남한사회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

한 「경실련」이 주최한 ‘민족화해 아카데미’, 중앙대의 ‘민족통합교실’, 연세대에서 실시한 ‘대안적 통일교육모색을 위한 실험교실’ 등은 남북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차원의 구체적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⁴⁹⁾

그 동안 냉전과 체제경쟁구도하에서 민간분야의 역할은 매우 제약되어 있었으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민간분야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도 궁극적으로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주체로 민간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방향성은 단기적 성과 내지는 과시적 목표달성이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극복과 민족공동체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 민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NGOs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민간분야는 정부차원에서 제기되기 어려운 문제 내지는 정부간의 공식적 교섭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NGOs는 민간분야의 특성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남북관계개선 및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정부측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호전적인 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완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창구의 다원화가 교류·협력 당사자의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무질서한 접촉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적인 대북접근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49) 전효관, “통일관련 시민단체 역할의 새로운 방향모색”, p. 6.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사회문화분야가 가지는 고유한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의 장려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NGOs 역할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정부와 NGOs 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냉전구도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는 상당기간동안 통일문제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보완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의 구사와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운동은 모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두 차원간의 배타적 관계설정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설정은 남북한의 궁극적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NGOs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NGOs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 NGOs는 재정적 문제로 효과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통일관련 NGOs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NGOs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시민운동차원의 협조 및 자율적 자기규제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일

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NGOs의 역할은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발성에 기초해야한다. 최근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그 부작용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에서 과당경쟁이나, 무원칙한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차원의 자율적 협의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식량, 의약품등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NGOs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기술지원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적 교류사안의 경우 특히 NGOs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산가족재회추진의 경우 북경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국자간의 교섭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체제내의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간차원의 노력은 새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상대의 사회문화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고양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NGOs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여성, 사회문제, 인도적 지원기구 등 다양한 NGOs간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도 북한과 다각적인 교류·협력구도를 구축하여, 민간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NGOs의 노력은 북한체제를 남한체제로 수렴한다는 일방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화해·협력의 실현과 북한사회 스스로의 내적 변화와 자율성 확대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⁵⁰⁾ 현실적으로도 시민운동차원에서 북한의 변화에 직접적으

50) “북한주민의 주체적, 자발적 개혁역량의 최대한 활성화 없이는 통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통일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진성우, “통

로 기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2차성이⁵¹⁾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일독일의 사회통합”, p. 38.

51) 서재진, 장경섭 등은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비공식영역인 ‘이차사회’ 논의를 북한에 적용, 북한의 새로운 변화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장경섭,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 이차의식, 이차경제, 이차사회”,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IV.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1. NGOs와 정부의 상호보완적 관계설정

서구의 경우 NGOs의 등장은 복지국가의 출현과 관계가 크다. 복지국가의 주요 특성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으로도 보장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며, 사회가 분화되면서 점점 더 국가가 대변할 수 없는 부분이 증가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NGOs는 새로운 역할의 담당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NGOs의 등장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중재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구에 있어서 NGOs는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NGOs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 국가에 반영하는 상시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도 증가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복지재원의 낭비는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NGOs는 이와 같은 국가의 과부하를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서구복지국가에 있어서 NGOs는 저항세력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협력단체라는 것이다.⁵²⁾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 발전 및 민주화추세와 병행하여 시민사회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NGOs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상당기간 개발독재의 과정을 거쳤다. 시장과 국가는 정경유착이라는 비합리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가 만연

52) 이홍균,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 김혁래 외,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연합, 1997), pp. 45-51.

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운동의 출발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대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시민운동을 국가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 및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NGOs와의 협력구도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NGOs차원에서조차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와의 협력이 고려되기 어려웠다. 오히려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저항이 NGOs의 중요한 자기정체성의 근원이 되었다.

권위주의체제하 한국사회의 구조적 상황은 NGOs활동과 관련 '어용·관변'과 '반체제·재야'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장기간 형성했다. 정권차원에서 민간분야를 의도적으로 육성,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관변단체는 정부의 의도대로 활동 및 사업을 집행하여 공생하는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왔다. 반면 재야 단체들의 경우 대체로 반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정부와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했다. 정부에 비판적 관계를 설정한 반면, 정부와 협조관계의 형성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통일운동에 있어 관변단체의 경우 정부의 정책노선에 대한 지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재야단체들의 통일운동은 비합법적 행위로 간주되어 정부로부터 억제되었다. 이와 같은 구도속에서 북한은 정부 및 관변단체의 교류·협력시도는 거부하고, 재야단체들과 선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재야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시도는 국가보안법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대안운동들이 강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시민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NGOs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재야'와 '관변'이라는 비타협적 이분법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NGOs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 NGOs운동의 대표적

단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의 「경실련 통일협회」의 경우 이와 같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다.⁵³⁾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NGOs활동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NGOs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자발적인 결사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가 또한 NGOs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부터도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s활동에 있어서 국가와 NGOs간 '비판과 협조'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은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태도를 조사한 아래의 <표 4>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 4>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찬성	중립	반대	합계(명)
시민단체가 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함	89.7	4.8	5.5	100.0(146)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만 받아야 함	46.1	10.6	43.2	100.0(141)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 모두 받아야 함	61.1	14.6	24.3	100.0(144)

자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체 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1994).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연구」, p. 28. 재인용.

53) “우리는 비판변적, 비정부적 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지난 시기 통일운동은 관변통일운동과 반정부통일운동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이제 이 양극단은 극복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해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엄정한 태도, 잘 할 때는 과감한 협조를, 못할 때는 따끔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용기, 이를 통한 정부와의 신뢰구축과 창조적 역할 분담이 새로운 민간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경실련통일협회·동아일보사,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pp. 21-22.

특히 장기간 권위주의체제속에서 NGOs와 국가간 ‘일방적 억제’와 ‘비타협적 비판’관계를 형성해온 한국사회의 경우 NGOs가 국가에 대한 ‘비판적 협조자’로 기능하는 새로운 역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여하는 NGOs의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s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정부는 NGO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위에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NGOs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NGOs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및 관주도형 NGOs 활동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NGOs 차원에서도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부에 대해 일방적 비판만을 하거나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활동으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부와 NGOs간 역할을 분담하고, 다각적 협조체제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NGOs 참여 허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협의회의 실무위원회에 NGOs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⁵⁵⁾은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제구축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54)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pp. 20-24.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9월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p. 34.

55)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자료집 (서울: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p. 25.

」의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와 구성⁵⁶⁾, 협의회의 기능⁵⁷⁾, 협의회의 의사, 그리고 실무위원회⁵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정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에 NGOs 대표들의 참여허용은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GOs로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NGOs의 비판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부와 NGOs간 협조관계를 강화시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장 1인(통일부장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공무원 그리고 간사는 통일원소속 공무원이 맡게 되어있다.
- 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있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조정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 5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2. NGOs에 대한 재정 지원

가.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통일기금 조성

한국의 대다수 NGOs가 열악한 재정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그 이유는 짧은 시민운동 역사와 덜 성숙된 시민의식, 정부의 비협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⁵⁹⁾ NGOs 활동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회원중심제의 재정운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시민사회가 완전히 발달했다고 볼 수 없는 한국사회의 경우 NGOs가 단기간에 회원중심의 재정구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NGOs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요하며, 실제로 대다수 NGOs가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NGOs의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이 심해질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⁶¹⁾ 정부의 지원은 NGOs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⁶²⁾

59) 「시민의 신문」, 제257호, 1998. 「경실련」의 경우 1989년 창립당시 1,904명이던 회원수가 1996년 11,472명으로 약 6배가량 증가했으나,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1991년 998명, 96년 942명 등 1천여명 안팎을 맴돌고 있다. 회원수가 각각 7천여명과 4천여명인 「배달녹색연합」과 「녹색교통운동」도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수백명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이유는 시민들의 참여의식부족과 기부문화의 미발달, 그리고 회원중심의 운동보다는 언론을 위주로한 명망가 중심의 운동성향에 기인한다. 「한겨레신문」, 1996. 5. 12.

60)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연구」, p. 53.

61) 이신화, 「국제기구의 동반자: 탈냉전기대 국제 NGO의 위상과 역할」, 「세계화와 한국 NGOs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연합, 1997), pp. 68-69.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육성방안연구」, pp. 54-55. 「시민의 신문」, 제 256호. 1998.

62) OECD의 각국 정부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정부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NGOs가 정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지원비율을 보면 영국, 프랑스의 경우 50%, 미국 50-80%, 이태리 70% 그리고 벨기에의

한국 NGOs의 재정문제는 통일관련 NGOs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취약한 재정구조는 NGOs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NGOs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지원, 촉진시키기 위해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2항은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그리고 5항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지원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협력기금으로 1998년 11월 30일 현재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300만원, 운용수익금 1,150억 8,100만원 등 총 6,506억 2,400만원이 조성되었다. 초기에는 축구, 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지원 등 남북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경색이 초래되었던 1993년, 1994년에는 집행이 없었다.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 심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1995년부터 대북 쌀 15만톤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 참여 형

경우 75%가 대략적인 상한선이다. 김혜경,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방안", pp. 126-127.

대 등으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1998년 11월말 현재 총 3,030억여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이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 경협에 관련되어 집행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1998년 11월말 현재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구성지원(1억 6천4백만원) 및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지원(7억 8천6백만원)과 1992년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 사업 준비금」(5억 5천백만원), 1998년 남북공동사진전경비(3천만원),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설치·운영비(천삼백만원) 등에 대해 약 15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 중 사회문화분야에서 민간분야의 주도로 사업이 신청되고 이에 대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것은 1998년 한국사진학회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남북협력기금이 매우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GOs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NGOs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을 다양화·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 예술, 학술, 체육분야 등의 분야에서 NGOs를 통한 교류·협력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보다 융통성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NGOs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사업별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며, 철저한 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NGOs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크고 사업실적이 많은 NGOs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유리한 반면, 군소 NGOs의 경우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정한 NGOs가 주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NGOs의 협의체가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을 통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민화협」은 가입단체의 특별회비, 국민모금, 기업의 출연, 장터·문화공연 등의 재정사업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화협」은 통일기금조성사업을 주관하고 이를 「민화협」활동의 주요 재정적 기초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⁶³⁾ 특히 「민화협」의 사업계획에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⁶⁴⁾ 「민화협」의 통일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를 NGOs의 대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주체가 되어 통일기금이 형성될 경우, 정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자율적인 민간 교류·협력사업에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민화협」이 NGOs협의체로서 공적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NGOs의 자율적 활동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큰 관건⁶⁵⁾이며, 따라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6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1998, p. 18.

64) 민화협은 사업계획에 민족화해 교류·협력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는 바, 아래와 같다.

-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사업: 농업교류,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사업, 남북 우수중자교류사업, 광업자원 및 공업분야 교류사업
 - 북한동포돕기 및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완화를 위한 국제연대사업
 - 학술 및 예술단 교류사업, 문화유산조사 및 보존을 위한 남북공동사업
 - 체육교류사업: 청소년축구 교환경기,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를 위한 사업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p. 19.

는 동시에 철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재정지원방식의 다각화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개발 NGO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참조, 이를 대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에 응용하여 NGOs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NGO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재정협력방식(Co-financing)’과 ‘위임 또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정협력방식’은 NGOs가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NGOs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비율은 국가별, 사안별 차이가 있다. 반면 ‘위임방식’은 정부가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NGOs는 대리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⁶⁵⁾ ‘재정협력방식’은 다시 Matching grants, Block grants, Multi-year fund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atching grants는 ‘재정협력방식’의 전형적인 형태로 NGOs가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Block grants 방식은 정부가 개별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분을 해당 NGOs에 일정액을 총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완료시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없이, 해당 NGOs전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Block grants방식의 경우 NGOs간 협의체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은

65) 「시민의 신문」, 제257호 1998.

66) 김채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 pp. 30-35. 김혜경,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방안”,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pp. 126-129. 참조

NGOs에 대해 지원이 집중되기도 한다. Multi-year funding은 NGOs의 사업이 장기적 성격을 지닐 경우 1년이상 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위임방식’ 또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은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NGOs를 정부의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사업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재정부담은 정부, 집행은 NGOs라는 협력구도가 설정된다. ‘재정협력방식(Co-financing)’이 NGOs자체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위임방식’ 또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은 정부 및 공적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NGOs가 해당분야에서 정부보다 경험과 노하우를 더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위임 및 하청계약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선진국 정부는 대의원조시 경우에 따라 NGOs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아직 시민사회의 구현과정에 있는 한국사회의 경우 NGOs의 취약한 물적 기반은 중요한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NGOs의 대다수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정문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응용하여 NGOs의 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어려울 경우 NGOs를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하청계약방식’(sub-contracts)은 NGOs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응용을 통해서 소규모에 그치는 NGOs 사업의 ‘규모의 문제’와 정부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지니는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물론 NGOs는 해당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s의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편차가 크고, 정부의 일방적 지원의 경우 NGOs의 대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협력방식'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 정부분을 NGOs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NGOs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NGOs에 대한 matching grants방식의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⁶⁷⁾ 이상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특성과 NGOs의 성격 및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재정협력방식'과 '위임방식'을 적절히 안배하는 재정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운동차원의 교류·협력사안이나, NGOs의 시민사회적 영향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Matching grants 혹은 Block grants 등의 재정협력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NGOs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교류·협력사업의 전문성과 해당 NGOs의 노하우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방식'의 재정지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제도 개선 및 기타 지원

NGOs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접촉승인제도의 개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절차의 간소화, 북한방문기간 연장 등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67) 민족통일연구원, "제1차 KINU-통일관련 민간단체 집중워크숍", 「1997년도 집중워크숍 결과보고서」, 1997.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8년 하반기 정책집담회 주제발표논문, 1998. 10. 13.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참조.

정부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에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15일인 북한주민접촉승인 처리기간의 재축소, 접촉승인기간 및 북한방문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NGOs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되어 북한주민과 수시로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될 경우 건별 결과보고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접촉시마다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을 월별, 분기별 1회 등 일괄 보고로 개선하는 것이 NGOs의 교류·협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⁶⁸⁾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도 실질적 지원의 의미를 지닌다. NGOs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료와 통신료지출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 및 전기, 상하수도 요금의 경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들 단체들에 대해 대폭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⁶⁹⁾

세금감면혜택은 NGOs에 대한 주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36년부터 법인과 개인의 자선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주 정부에 법인으로 등록된 NGOs가 국세청에 등록할 경우, 세금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캐나다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NGOs기부금에 대해 과세수입의 5-10%범위에서 세금공제혜택을 부여하며, 기업도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영국의 경우 일정액(250파운드)를 넘을 때만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며, NGOs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및 주식배당 등의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

68)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pp. 18-2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69)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육성방안연구」, pp. 54-55.

다.⁷⁰⁾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NGOs에 대해 기부나 현금시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임의단체 성격의 NGOs를 법인화하여 기업이나, 재단, 개인들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대로 하면 기업이 비료나 옷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위한 모금의 활성화가 어렵다. 따라서 NGOs의 요구사항인 기부금품모금규제의 완화, 인도적 사업에 대한 세금면제혜택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¹⁾ 특히 통일기금형성 방법으로 ARS모금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RS를 통할 경우 모금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NGOs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⁷²⁾ 통일관련 사업에 대해 ARS모금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던 1998년 4월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금식」행사에서 행사당일 은행공동구좌를 통해 2천7백만원이 모금되었는데 비해서 ARS를 통해서 2억 4천4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⁷³⁾ 또 1998년 6월 5일 북한어린이 등 굶주림을 겪고 있는 세계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방송과 「한국선명회」가 공동 주최한 「98 기아체험 24시간」에서는 전화모금액이 23억 7천만원에 달했다.⁷⁴⁾ 따라서 ARS 모금방식의 활성화는 통일관련 NGOs의 사업기금조성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70) 김혜경, “개발 NGO의 현황과 발전방안”, pp. 121-123.

71)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72) 「시민의 신문」, 제257호. 1998.

73) 36개국, 107개도시에서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금식」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종단과 홍사단, YWCA, 녹색연합 등 94개 시민단체가 참가했으며, 외국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유엔아동기금(UNICEF), 미국재향군인회 등이 참가했다. 또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달라이 라마, 빌리 그레이엄목사, 제시 잭슨목사 등 세계적 저명인사들도 동참했다. 국내 북한동포돕기운동과 해외사회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한겨레신문」, 1998. 4. 30.

74) 「조선일보」, 1998. 6. 8.

4. NGOs 협의체 구성

「국민의 정부」는 민간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는 과거 교류·협력 창구단일화원칙에서 벗어나 창구다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취지이다. 창구다원화정책은 민간분야의 교류·협력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다. 그러나 창구다원화는 동시에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과당경쟁과 과열,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실리추구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북 교류·협력의 과열 및 과당경쟁, 과시성 행사, 교류·협력성사를 위한 북측의 과도한 요구수락, 금품제공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⁷⁵⁾

그러나 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구도속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간분야의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민간 교류·협력분야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 교류·협력에 대한 상호정보교환⁷⁶⁾ 및 공동협력사업의 실시, 그리

75) 최근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벌인 종교분야의 경우 1998년 6월 재미동포 이광덕 목사와 10월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이 간첩혐의로 북한에서 추방되었다. 연변과기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김진경총장의 추방사유로 자유주의 이념전파, 중국식 개혁개방유도, 기독교전파 등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는 종교단체의 지원을 넘어선 선교활동에 대한 북한의 경고일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남북 교류의 과열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경쟁이 지나치고 공격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교단들이 남북을 위해 국경 지역에 파견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지나쳐 현지인들의 거부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이 즉흥적이고, 과시적인 실적위주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방북자체를 이용 위상을 높이려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일관된 대북정책을 세우지 못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1998. 11. 28.

고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와 보다 효율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분야의 자율적 민간 협의체의 구성은 분야별 전문화와 전체네트워크 구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9월 출범한 「민화협」은 민간분야 남북 교류·협력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협의체 및 구심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화협」의 결성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민화협」을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분야에 있어서 권위있는 민간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8년 7월 6일 여야 4당을 포함한 12개 정당-단체 대표들이 통일부의 주선으로 간담회를 갖고 대북 민간교류의 창구를 맡게될 범민간 차원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발족문제를 본격 논의했다.⁷⁷⁾ 이 협의회는 원래 북한이 결성한 「민족화해협의회」에 대응하는 민간기구로서 8·15 통일대축전 준비와 향후 북한과의 교류 전반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후 정당·사회단체 등 1백70여개 단체의 참여⁷⁸⁾속에 「민화협」은 1998

76) 그 동안 NGOs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통일된 조직이나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및 독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보에 대한 독점문제는 비단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도 정보에 대해서 배타적 내지는 폐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민간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보에 대한 상호공급 또는 유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 “제1차 KINU-통일관련 민간단체 집중워크샵”, 1997년도 집중워크샵 결과보고서, 1997. p. 291.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협의회 관련 회의보고서」, 1998. pp. 82-83.

77) 여기에는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국민신당, 민족통일협의회, 대한체육회, 예총, 경실련, 이산가족교류협의회, 민족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예총 등 12개 정당-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78) 1998년 9월 28일 현재 민화협참여단체는 통일운동단체(32), 시민사회(42), 종교(15), 경제(7), 문화·예술·체육(11), 직능단체(29), 노동·농어민(10), 여성(17), 보건·의료(5), 청년·청소년(7), 교육·학술·언론(15), 법조(2) 등 총 194개

년 9월 3일 결성식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민화협」의 결성은 분단 반세기만에 민간부문에서 통일문제 논의와 활동의 구심체 탄생 및 본격적인 민간교류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민화협」은 남북정부당국이 통일지향적 방향으로 가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정당 사회단체의 상설협의체’로서 정부에 대한 의견행사 및 민간분야의 통일운동 활성화를 주요 사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⁹⁾

NGOs 협의체는 민간분야 역량의 강화속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NGOs에 대해 공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화협」의 경우 민간단체의 내적 역량의 축적에 의해 장기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⁸⁰⁾ 따라서 향후 민간분야의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적 영향을 억제하고 민간단체 대표들의 실질적 운영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민화협」은 민간 남북 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해소, NGOs

단체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1998, pp. 33-38. 참조.

79) 「민화협」, 1998, pp. 8-13. 참조.

80) 민화협의 결성을 위한 논의가운데 가장 큰 네 가지 쟁점은 ‘민족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본부’와 민화협과의 관계, 민화협의 결성시점, 남북계의 주체문제, 민화협의 상임의장 중 수석의 존재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쟁점은 크게 민간단체의 창발성을 유지하면서 민화협을 남남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보자는 민간 단체의 입장과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달라는 정당의 요구로 압축될 수 있다.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p. 32.

의 교류·협력활성화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회원단체들에 대한 공적권위 및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차원의 방북에 대해 「민화협」에 방북추천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⁸¹⁾ 「민화협」에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질 경우 민간분야 교류·협력의 조율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보장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민화협」에 방북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민간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화협」이 일방적 방식으로 대북창구를 일원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통일논의나 교류·협력을 독점화할 경우 새로운 창구단일화로 민간통일단체의 자율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는 우려⁸²⁾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화협」의 민주적 운영과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단체 협의체로서의 성격이 보장되고, 민간단체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을 고려했을 때 「민화협」을 민간 교류·협력의 구심체로 만들고, 통일관련 NGOs의 협의체화하는 발전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화협」과 같은 전체네트워크의 구성과 아울러 전문분야별 협의체구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최근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사안별로 협의체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⁸³⁾, 이를 효과적으로 발

81)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9월 23일 “북한에 대한 왕래나 방북문제의 경우 「민화협」을 거쳐 사무처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이는 통일부에서 방북신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방북관련규정을 개정, 「민화협」에 방북추천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의 까다로운 방북 승인심사과정이 완화되어 민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화협 소식」, 준비 1호, 1998. p. 3.

82)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p. 32.

83)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점 해소와 정보교류 및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

전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민간분야의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을 고려할 때, 「통일문제연구협의회」⁸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통일문제연구분야에서의 협의체구축이라는 점과 아울러 민간분야의 의견을 정부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반영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북한 통일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주요 북한 통일문제연구소와 사회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형성 및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분야의 협의체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⁵⁾ 특히 관련 NGOs의 경우 「통일문제연구협의회」의 네트워크에 연계됨으로써 북한연구의 심층적 정보자료교환 및 연구실적의 교류가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통일운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벌이는 112개 시민·종교·사회단체들이 1997년 6월 30일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를 구성했으며, 북한동포돕기에 대해 종교계와 NGOs가 연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한겨레신문」, 1997. 6. 30. 또한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협의회」가 1998년 5월 출범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21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민간기구로, 정부와의 협조체계구축을 통해 이산가족교류 및 재회사업 지원과 이산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사업추진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84) 민족통일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9일 발기총회가 있었다.

85)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협의회 관련 회의보고서」, 1998. 참조.

5. 전문 NGOs와 국제 NGOs 활용

NGOs는 각기 전문성과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분야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 NGOs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성이거나 단순지원, 교류·협력이 아닌, 기술과 전문인력교류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NGOs가 프로젝트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민간단체들의 대북협상력 및 협력사업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컨소시엄 구성방안은 개별 NGOs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컨소시엄사례로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농업은행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종교계, 민간단체, 농협 등이 연대하여 자금을 마련, 대북농업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⁸⁶⁾

현재 국제 NGOs의 활동은 매우 왕성하다. 특히 국제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환경, 여성문제에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국제적 NGOs와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는 못하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 NGOs의 연륜이 서구에 비해 짧고, 관련되는 전문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데에 있다. 인도지원, 인권, 환경, 여성문제 등이 전지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NGOs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음을 감안하여 국제 NGOs와의 연대 및 활동의 세계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⁸⁷⁾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86)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87) 성경룡, 김초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방안연구」, pp. 18-19

때 국제적 NGOs와의 연대는 북한측으로 부터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대북사업의 성사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도 각 분야별 국제 NGOs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국제 NGOs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NGOs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신뢰유지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세계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⁸⁸⁾ 같은 맥락에서 대북지원 및 인권⁸⁹⁾, 환경, 위안부문제, 학술, 탈북자문제⁹⁰⁾ 등 북한관련 외국의 NGOs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북 공동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계 비정부단체들이 참여해 환경, 인권, 여성문제를 논의하는 NGOs 여덟 번째 세계대회가 1999년 10월 「21세기에 있어서 NGOs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남북 교류·협력성화를 위해 NGOs간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⁹¹⁾

88) 1998년 10월 15일부터 17일 까지 미국 LA의 한인타운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대회가 미국본부, 캐나다본부, 남태평양본부, 러시아본부 그리고 한국본부에서 약 6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결성 및 기구 구성, 대표선임에 합의했으며, 사무국은 서울에 두기로 했다. 세계협의회 주요사업은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관련 사안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12. 1. p. 1.

89)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90) 최근 탈북자를 돕기 위한 전문 NGOs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출범했다.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탈북자돕기 순수 민간단체인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이 오는 1998년 9월 10일 도쿄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단체는 시민연합 앞으로 보낸 창립 취지문에서 “현재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은 지난 2년간 북송 재일교포들에 대한 인권활동을 펴고있는 「일본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회장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학 교수)의 활동이 방대해짐에 따라 탈북자를 돕기 위한 전문단체로 독립했다. 「조선일보」, 1998. 9. 8.

V. 결 론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최근 민간분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실천하는 NGOs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상황적 변화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국민의 정부」 출범후 새로운 대북정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현 단계를 화해·협력기토 설정한 만큼, 남북한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 경우 NGOs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50여년 이상을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재해왔으며, 최근까지도 냉전적 대립을 지속해왔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필연적으로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심화시켜왔다. 이와 같은 이질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독일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질화의 해소는 긴장과 갈등관계의 완화라는 전제하에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장을 넓혀 가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질화의 해소에 중요한 것은 분단보다 더 장구한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특성을 회복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보다 바람직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장기간 남북한 사회문화 교

91) 아파프 마포즈 비정부기구회의의장은 “99년 서울대회에 북한의 NGOs들도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중이며 성사시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 대회마다 전세계 1만명 넘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NGOs국제대회는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등이 열렸고 1999년 서울대회는 여덟 번째다. 「조선일보」, 1998. 9. 29.

류·협력은 남북관계가 정치요소에 의해서 지배되는 구조속에서 종속 변수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큰 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외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인 차원이 아닌 남북한 이질화 해소와 장기적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분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s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NGOs를 통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민간교류·협력의 확대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인 선택이며,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활발한 시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비해 시민사회가 아직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NGOs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NGOs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효율적 협력관계설정, 재정지원 및 기타 법제도 개선, NGOs 협의체 구성 및 효율적 활동방안 모색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NGOs의 노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진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진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NGOs의 자율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방안이나, 협의체구성 등에 있어서도 NGOs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NGOs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가 주는 궁극적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NGOs의 투명한 활동을 위해서는 NGOs 자체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및 정치권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와 같은 전제위에서 NGOs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활성

화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며, 통일 문제 및 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통일 기반조성과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실련통일협회·동아일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 1994.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개요」. 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2.
-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채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2.
-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4.
- _____. 「사회문화공동위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1997년도 집중워크샵 결과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_____. 「통일문제협의회 관련 회의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1998.
-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 성경룡, 김호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연구」. 서울: 정무제1장관실, 1997.
- 시민의 신문사.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시민의 신문사, 1997.
-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일조각, 1983.
-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

일연구원, 1997.

이면우 편. 「일본의 NGO활동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1998.

이원웅.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대한 연구-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 정의과 박사학위논문, 1996.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통일부.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 통일부, 1998.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2.

_____.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5.

_____.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1996.

Ritzer, G. et. al. *Sociology*. Allyn & Bacon, 1979.

Salamon, L. M. & Anheier, H. K. *In search of non-profit sector: The question of defini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

Schermers, H. G.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Sijthoff & Noordhoff International Publishers, 1980.

2. 논문

강문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년 하반기 정책집담회 주제발표논문. 1998.10.

김영래. “한국비정부단체의 세계화전략연구”. 「국제정치학논집」. 제

37집 1호, 1997.

-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 NGO의 현황".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 방안」.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7.
- 김혜경.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혁래 외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실련, 1997.
-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이신화. "국제기구의 동반자: 탈냉전기대 국제 NGO의 위상과 역할". 「세계화와 한국 NGOs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연합, 1997.
-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 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 이홍균.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 김혁래 외.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연합, 1997.
- 조한범,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 장경섭.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 이차의식, 이차경제, 이차사회". 「현상과 인식」, 1994.
- _____. "통일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 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 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전효관. "통일관련 시민단체 역할의 새로운 방향모색". 「남북한 사회 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8.
-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정책 토론자료집.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 Otto, Dianné.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emerging role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Human Right Quartely*, Vol. 18. 1996.
- Willet, Peter. From Stockholm to Rio and beyon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No. 22, 1996.

3. 기타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제86호, 1998. 8월.
- _____.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제88호, 1998. 10월.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남북협력기금법」
- 「민화협소식」
- 「시민의 신문」

「연합통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선일보」

「한겨레」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著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著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著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共著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著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著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著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著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著	발간예정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용	著	5,0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著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p>■ 통일문화시리즈</p>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 A 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199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10px auto;"> 신청인 (인) </div>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